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서식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영 제25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로 본다.

별표 4 제2호나목2) 7급 2505의 장애내용란 1)의 “후두미세술 시행”을 “후두암으로 진단받은”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15) 중 “침샘암의 얼굴마비”를 “얼굴마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급 1항 4101의 장애내용란 2) 중 “구음장애”를 “구음장애”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5)나) 본문의 후단 중 “기관제확장제”를 “기관지확장제”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7)에 바), 같은 목 9)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바) 항암요법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말한다.

9) 소화기 장애는 내시경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결과 및 약물치료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3급 5104의 장애내용란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비호지킨임파선암, 다발골수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5급 5106의 장애내용란 1) 중 “유착으로”를 “유착 또

는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로 하고, 같은 란 8)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요법 중인”을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란 9) 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6급 2항 5108의 장애내용란 2)를 “2) 간 손상 또는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Child A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4) 중 “받은”을 “받았거나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란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6)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받은”을 “받았거나 필요한”으로 한다.

- 1) 위, 장관의 부분절제술(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착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람
 - 나) 심한 소화기능 장애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
- 5) 연조직육종으로 진단 후 근치적 절제술 또는 1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7급 5111의 장애내용란 4) 중 “장의 절제로”를 “위, 장관의 부분 절제 후”로 하고, 같은 란 5)를 삭제하며, 같은 란 11) 중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염증성 장질환으로”로 하고, 같은

란 6)부터 16)까지를 각각 5)부터 15)까지로 한다.

별표 4 제6호나목 7급6110호의 장애내용란 중 “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을 “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8조의9(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 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요양 중인 경우,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신 설>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영 제2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개정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2) 입의 장애		2)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7급 2505	1) <u>후두미세술 시행</u>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2) (생략)	7급 2505	1) <u>후두암으로 진단받은</u> 후 경과 를 관찰 중인 사람 2) (현행과 같음)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가. 장애 측정방법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침샘암의 얼굴마비</u> 정도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얼굴 신경마비 평가기준(이하 "얼굴신경 마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5) <u>얼굴마비</u> 정도는 하우스-브렉만 (House-Brackmann) 얼굴신경마 비 평가기준(이하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1항 4101	2)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편마 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 상으로 인하여 폐용(기능상 실)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u>구음장애</u>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1급1항 4101	2)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편마 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 손상으로 인하여 폐용(기능 상실)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u>구음장애</u>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가. 장애 측정방법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u>기관제확장제</u>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7)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 마) (생략) <u><신설></u> 8) (생략) <u><신설></u> 나. 상이등급 내용		나)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u>기관지확장제</u>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항암요법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말한다.</u> 8) (현행과 같음) <u>9) 소화기 장애는 내시경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결과 및 약물치료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u>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상이등급 분류번호	장애내용
3급 5104	11) <u>비호지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항암요법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2차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u>	3급 5104	11) <u>비호지킨임파선암, 다발골수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 사람</u>
5급 5106	1)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u>유착으로</u>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5급 5106	1)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u>유착 또는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u> 가벼운

현행		개정안	
	2) ~ 7) (생략) 8) <u>만성골수성백혈병</u>의 만성기로 2차 <u>항암요법 중인</u> 사람 9) <u>만성림프구성 백혈병</u>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 · 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 10) ~ 12) (생략)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 7) (현행과 같음) 8) <u>만성골수성 백혈병</u>의 만성기로 2차 <u>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u> 사람 9) <u>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병</u>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 10) ~ 12) (현행과 같음)
6급2항 5108	1) (생략) 2) <u>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u> 3) ~ 9) (생략)	6급2항 5108	1) (현행과 같음) 2) <u>간 손상 또는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Child A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u> 3) ~ 9) (현행과 같음)
6급3항 5110	1) <u>위를 부분절제한 후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u> <u><신 설></u> <u><신 설></u> 2) ~ 3) (생략) 4)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요법을 <u>받은</u> 사람 5) <u>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근처적</u>	6급3항 5110	1) <u>위, 장관의 부분절제술(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유착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람</u> <u>나) 심한 소화기능 장애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u> 2) ~ 3) (현행과 같음) 4)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요법을 <u>받았거나 필요한</u> 사람 5) <u>연조직육종으로 진단 후 근처</u>

현행		개정안	
	<u>절제가 된 상태인 사람</u> 6) <u>만성골수성백혈병의</u>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u>받은</u> 사람 7) (생략)		<u>적 절제술 또는 1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필요한 사람</u> 6) <u>만성골수성 백혈병의</u>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u>받았거나 필요한</u> 사람 7) (현행과 같음)
7급 5111	1) ~ 3) (생략) 4) <u>장의 절제로</u> 정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u>5) 위의 부분절제로 유착이 있는 사람</u> <u>6) ~ 10) (생략)</u> <u>11)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u>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u>12) ~ 16) (생략)</u>	7급 5111	1) ~ 3) (현행과 같음) 4) <u>위, 장관의 부분 절제 후</u> 정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u><삭제></u> <u>5) ~ 9) (현행과 같음)</u> <u>10) 염증성 장질환으로</u>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u>11) ~ 15) (현행과 같음)</u>
7급 6110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7급 6110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20퍼센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장해진단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한 확인 원로 []
	주소	전화번호	
전상· 장애 등급 내용	② 발병일 (발병부위)	부상(발병) 일	

③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④ 장애 내용 및 상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의뢰기관 명칭		년	월	일
의뢰기관 주소	직 인	장해진단 의사 성명	(서법 또는 민)	
		의사 면허번호		
		집안의 자격번호		
		집안의 과목		

첨부서류	1. 수간서(국가보훈부장관이 갈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 3. 그 밖에 발작성 사건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함을 증명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 대상 분야 전문화가 확실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상 분야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 신청에는 진원회사(작업 집단 대상자가 적용하여 그 인사사항을 신중히 관리할 경우, 기간 만료 전 영·준영향금, 공무원 공·국립·지방자치 학생, 교육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등 국가관리 신중금을 할당, 집안 대상자가 유족상여금, 결혼금 지급을 위한 신중금 확인할 수 있는 신중금으로 대체 가능함)과 의료자에 집단 대상자가 준영향을 확인할 경우에만 확인한 후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 대상자는 진원사에게 본인의 신중금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갈하는 장애 종류에 따른 질병(발병)을 적습니다.
- 신청에는 치료 기간, 치료 결과, 수술명 및 수술일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신청에는 일상생활 중 장해상태를 읽고, 중요한 경우에는 모든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상이등급은 적지 않습니다.

개 정 안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장해진단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한 확인 원로 []
	주소	전화번호	
② 전·공상 인정상이처(발병부위)			부상(발병)일
③ 현재 질병명 (최종진단명)			④ 장애 확정일
질병 코드			

⑤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⑥ 장애 내용 및 상태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의뢰기관 명칭		년	월	일
의뢰기관 주소	직 인	장해진단 의사 성명	(서법 또는 민)	
		의사 면허번호		
		전문 의 자격번호		
		전문 의 과목		

첨부서류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갈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 3. 그 밖에 발작성 사건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함을 증명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 대상 분야 전문화가 확실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상 분야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 신청에는 진원회사(작업 집단 대상자가 적용하여 그 인사사항을 신중히 관리할 경우, 기간 만료 전 영·준영향금, 공무원 공·국립·지방자치 학생, 교육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등 국가관리 신중금을 할당, 집안 대상자가 유족상여금, 결혼금 지급을 위한 신중금 확인한 후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 대상자는 진원사에게 본인의 신중금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신청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갈 하는 장애 종류에 따른 질병(발병)을 적고, 중요한 경우에는 모든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상이등급은 적지 않습니다.
- 신청에는 치료 기간, 치료 결과, 수술명 및 수술일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신청에는 일상생활 중 장해상태를 읽고, 중요한 경우에는 모든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단, 상이 장애(분류)를 적지 않습니다.
- 신청에는 일상생활 중 장해상태를 읽고, 중요한 경우에는 모든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단, 상이 장애(분류)를 적지 않습니다.